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59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7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17. 10. 24.

## II . 제안이유

-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설립 요구
- 교육공간기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공간 개선사업과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연계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
- 사회·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 디자인혁신 추진체계 마련

### Ⅲ. 주요내용

1.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·추진에 관한 사무를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명시(안 제9조)
2.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존속기간을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2년으로 정함(안 부칙)

### 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2. 예산조치 :
  - 조례 시행 후 예산이체
  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[조례안 별첨2 참고]
3. 기 타 :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[조례안 별첨1 참고]
  - 입법예고(2017. 9. 16. ~ 10. 5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59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(가칭)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설치

-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9호는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로 ‘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·추진에 관한 사항’을 신설하여 현재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통합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특히 ‘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’(교육부, 2016.7.5)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각 시·도교육청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역 내 효율적인 학교설립과 기존 학교의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또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지역 중심의 인구의 수평이동 등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소규모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.

이에 대해 교육부도(지방교육자치과-3852, 2017.8.23) 전담부서 구성을 위한 4급 정원을 승인한 바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전담부서는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<sup>1)</sup> 따른 한시기구인바 기존 교육행정국의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명확한 사무 분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

한시기구 존속기간(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, 2년)의 범위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**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---

1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# 관계 법령

#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- 제30조(보조기관)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(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·도는 2인)을 두되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.
-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, 그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.
-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·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7.6.14.] [대통령령 제28013호, 2017.5.8., 일부개정]

- 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